

의안번호	2215921
의 퇴 인	임호선의원
회 답 일	2026. 4. 7.
추 계 번호	26D0082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 고
1	안 제17조 (재해보상 등)	시·도지사가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부상의 범위에 신체에 장애를 입은 경우를 포함하도록 하고, 의용소방대원의 임무 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신체에 장애를 입은 경우를 포함)을 입은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료비를 지급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음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17조 (재해보상 등)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의용소방대원 부상 등에 대한 재해보상(안 제17조)

-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의용소방대원 부상의 범위에 신체에 장애를 입은 경우를 포함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치료비를 지급하고 이를 위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추가재정소요 예상
 - － 현행법에 따라 시·도지사는 의용소방대원이 임무 수행 등으로 인한 질병 또는 부상 및 사망 발생 시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음
 - － 소방청에 따르면,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요양보상, 장애보상 등을 목적으로 단체 상

해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재해보상의 종류와 지급기준은 행정안전부령, 재해보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은 시·도 조례로 규정하고 있음

- 다만,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하였을 때 부상의 범위에 신체에 장애를 입은 경우를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치료비 지급에 대한 법적 근거를 규정하여 재해보상 보험료의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추가재정소요 예상
- 다만, 개정안에서 규정한 치료비 지급의 구체적인 내용을 행정안전부령, 시·도별 조례에 위임하고 있고, 현행법에 따라 의용소방대원 재해보상을 위하여 가입하고 있는 단체 상해보험료의 개정안에 따른 인상분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 곤란
 - 참고로, 2024년말 기준 전국 의용소방대 규모는 18개 시·도 3,979대, 92,484명이 활동하고 있음(소방청 자료)
 - 소방청에 따르면,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재해보상 현황은 2025년 기준 24명에게 2,761만원의 요양보상금이 지급되었음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이미연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미연	02-6788-4661	mylee@nabo.go.kr